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1691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4.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22. 4.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4.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22. 4.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목록]

1. [토지] 충청남도 논산시 답 1266㎡
중 지분 2분의 1
2.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임야 17653㎡
중 지분 17653분의 99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가. 원고는 소외 채납자 B [서울특별시 양천구 C [D 호 []에 대하여 430,264,7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B []의 자녀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화,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B []는 2022. 4.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합니다)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2. 4. 12. 접수 제11084호 및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22. 4. 12. 접수 제3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 1) B []는 2021. 7. 12. 소외 E []의 1인파 자신 소유의 서울시 송파구 [] F [] 아파트 G []호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2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건물등기부등본).
- 2) B []는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270,552,930원을 납부하였으나, 1세대1주택 신고세율 요건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은 2022. 7.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B []에게 양도소득세 386,996,015원을 고지하였습니다.
- 3) B []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납기후가산세 48,210,400원을 포함한 양도 소득세 435,206,41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1 : 소재기일 현재 H 국세채납액 >

(단위: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채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21	2021. 10. 31.	2022. 7. 31.	386,996,010	427,851,510
합 계					427,851,51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 3)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피고가 2021. 10. 29. 서울시 송파구 []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21. 10. 31.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이 전부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021. 10. 29. 서울시 송파구 [] 아파트 양도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2022. 6.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로서의 부동산 증여

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B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통지서를 2022. 3. 22.에 받고 2022. 4. 6.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이후 과세관청의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처분을 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22. 4. 12. 접수 제11084호 및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22. 4. 11. 접수 제3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우편물수령증 및 세무조사통지).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B의 무자력

- 1) 채무자가 채무조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2) B는 2022. 4. 6.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평가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431,889,100 원입니다(갑 제6호증 채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내역, 갑 제8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 3)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427,851,510원의 조세채무, 42,739,670원의 지방채무가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합니다(갑 제8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갑 제9호증 서울시채납내역 회신).

< 표 2 : 사해행위(2022. 4. 6.)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

(단위: 원)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충남 논산시 I 토지	17,724,000
		강원 양양군 J 토지	5,832,960
		계	
	금융재산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5,966,663
		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	3,827,109
		우리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384,716
		우리은행 (계좌번호 4 생략)	1,580,000
		KB증권 (계좌번호 5 생략)	20,803
		NH투자증권 (계좌번호 6 생략)	498,869
	계	56,835,120	
소극재산	국세채납	양도소득세	386,996,010
	지방채납	서울시채납	38,619,760
	계	425,615,770	
합 계		△ 368,780,650	채무초과

4. B의 사해 의사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7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더욱이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다. B는 서울시 송파구 F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이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피고의 악의

가.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역시 B의 자녀로서 B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시 송파구 F 아파트 양도에 따른 세무조사 및 이 사건 부동산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386,996,010원 상당이 부과될 것 또한 명백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6. 제척기간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증여자료 기획분석 자료를 통하여 2023. 2. 6. 채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채납자 재산내역과 관련 금융조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채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9호증 증여자료 기획분석 시달문서).

7.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B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